

2022. 9.

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 제 시 의 회



# 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발의 : 최승선 의원 )

의 안 번 호	2022-77
------------	---------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최승선 의원

## 1. 제정이유

- 김제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적 경제조직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나. 시장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7조)
- 라.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장의 직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안 제12조)
- 바. 간사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안 제14조)
- 사. 교육훈련, 경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안 제17조)
- 아. 홍보,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안 제19조)
- 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3. 참고사항**

- 가.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 여
- 라. 비용추계서 대상 여부 : 부
-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여

### **4. 불임자료**

- 가. 조례제정안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사회적경제 관련 전라북도 조례 현황
- 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마. 타부서 의견조회 결과보고서
- 바.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 사. 타 시·군 조례 예시문
- 아. 참고자료 : 김제시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 김제시 조례 제 호

# 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재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 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사.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차.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카. 「산림조합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하.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 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 및 단체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

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
5. 제15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
6.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7. 제19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김제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김제시,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진흥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 나.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 다. 사회적경제 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등 사회적경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경제를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위원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선정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김제시 사회적경제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경영지원)** 시장은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2.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3. 제19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제19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제2조제3호 중 가, 나, 다, 라에 해당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1.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2. 김제시의회

3.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4. 김제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실적이 연도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김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김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심사 및 감독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6.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지

## 원

7. 제1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활동 지원
8. 제19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9.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조직 동향분석 및 정책조사 연구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를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사항

-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지원센터가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전라북 도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원활히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제시 사회적기업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위원회의 운영 (안 제12조)
- 교육훈련 지원 (안 제15조)
- 경영지원 (안 제16조)
- 재정지원 (안 제17조)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20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사회적경제 지원에 관한 기본 정책이나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 이후에 비용산정이 가능

## 4. 작성자 : 경제진흥과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경제진흥과장 김 용 현

##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제정현황		비고 (제정년월)
	여	부	
본청	○		'18.10월
전주시	○		'14.12월
군산시	○		'18.10월
익산시	○		'16.07월
정읍시	○		'21.12월
남원시	○		'20.05월
완주군	○		'16.04월
진안군	○		'21.03월
무주군		○	
장수군	○		'21.12월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20.07월
부안군		○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전북김제064							
정책명	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김제시						
	부서명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김보람	전화번호	063-540-276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9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국)	<p>■ 법령명 : 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p> <p>I. 개요</p> <p><input type="checkbox"/> 목적</p> <p>○ 김제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적 경제조직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p>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p>○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p> <p>○ 시장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p> <p>○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7조)</p> <p>○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p> <p>○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장의 직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2조)</p> <p>○ 간사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안 제14조)</p> <p>○ 교육훈련, 경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안 제17조)</p> <p>○ 홍보,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안 제19조)</p> <p>○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p> <p>II.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없음</li><li>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li><li>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없음</li><li>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li><li>성별 균형 참여(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없음</li><li>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li><li>성별 통계 관련 조항 : 해당없음</li><li>성별 통계 개선안 : 해당없음</li></ol>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p>■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p> <p>'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p>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김제시 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은/063-540-6906)								
의회사무국장 귀하								

□ 입법예고 결과

□ 타부서 의견조회 결과

## □ 타 시 · 군 조례 예시문

### 장수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정 ) 2021.12.15 조례 제25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 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 · 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재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 · 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다.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

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사.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차.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카. 「산림조합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타.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하.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 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법인 · 조합 · 회사 · 농어업법인 및 단체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

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발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및 판로 지원과 사회적경제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

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제14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
  5. 제15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
  6.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7. 제19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 · 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 · 자문하기 위해 장수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사회적경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정책 · 사업의 수립 및 집행
  2.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 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부군수

2. 제3항제2호나목부터 사목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들이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

③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제2조제3호마목, 바목, 아목에 따른 조합의 대표

다. 제2조제3호파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의 대표

라. 제2조제3호하목에 따른 금고의 대표

마.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대표

바.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사.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표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장수군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이하 “사회

적 경제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과 사회적경제 정책 · 사업  
간의 연계

3.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 구성) ①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  
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가.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

나. 사회적경제와 연계 가능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사  
업을 담당하는 실과장

다.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  
무원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사회적경제 행정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 및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  
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회적경제위

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에 거주하는 주민
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3.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경영지원) 군수는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2.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3. 제19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제19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1.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 군의회
3.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지원청
4. 군에 소재한 공립 초·중·고등학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② 군수는 우선구매를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우선구매 실적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 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관련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적경제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심사 및 감독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

8. 제1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시·도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지원센터 간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지도·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56호, 2021.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수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 참고자료: 김제시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 □ 자활기업 현황

명 칭	주소 및 주요사업	대표자	규 모	참여 인원	창업일	비 고
(유)상우산업개발 (9호)	김제시 금성로 194 (집수리 사업)	송수웅	1,980㎡	11	10.04.01	
(유)성부산업 (10호)	김제시 금성로 194 (청소 위생관리 용역등)	채선주	1,980㎡	4	13.05.01	
희망나르미 (11호)	김제시 두월로 184 (양곡 택배업)	김용섭	105㎡	4	17.07.19	
클린세탁 (12호)	김제시 동서로 63 (숙박업소 대량세탁)	이영구	297㎡	7	18.12.03.	

### □ 사회적기업 현황

구분	최초 지정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내용	비 고
인증	2010. 05.26.	(유)수인테리어	배영술	남북로 252	벽지 및 장판지 경미한 공사	2010.05.26. 인증
인증	2011. 09.15.	(유)상우산업개발	송수웅	금성로 194	보일러 시공, 도배, 장판	2013.05.'10. 인증
인증	2013. 03.17.	(사)글로벌투게더김제	최원규	금구면 애통길 144	베이커리, 카페 운영	2016.11.07. 인증
인증	2015. 08.06.	(유)엘리트푸드	장수광	금구면 금백로 2-6	돈까스 생산·판매	2017.09.12. 인증
인증	2015. 08.06.	(유)새만금 유기농꾸지뽕	이정모	금산면 금산사4길 208	꾸지뽕 활용한 제품 생산·판매	2017.09.12. 인증
인증	2019. 04.18.	(사)산소리숲마을	조명자	동서로 214	숲체험, 학교숲강사파견	2021.03.10. 인증
인증	2019. 08.27.	(유)경우산업	변상경	백구면 영상4길 219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2021.09.08. 인증
예비	2020. 03.25.	(유)한스아카데미	한정민	중앙로 180(3층)	인문학교육 및 레스토랑 운영	2020년 신규지정
인증	2020. 09.02.	(유)삼보정보통신	오진균	서흥공단 2길 56	CCTV 제작 및 판매	2022.06.21. 인증
예비	2020. 09.02.	(유)이랑고랑	황유진	동서9길 55, 2층	미술교육서비스	2020년 신규지정
예비	2021. 09.01.	협동조합 더클래식	김재영	금성로 88	문화예술교육 및 클래식카페 운영	2021년 신규지정
예비	2021. 09.15.	주식회사 선한나무	김용길	금성8길 9-18	목재교육 및 목공체험	2021년 신규지정

## □ 마을기업 현황

구분	최초 지정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내용	비 고
재지정	2010	신텔미산영농조합법인	김동기	부량면 벽골제로 39 3-54	쌀, 보리 및 농산물 생산·판매	2011년 재지정
신규	2013	사랑골 영농조합법인	이명희	백구면 학동1길 194-35	목장형 유가공체험장 운영 및 유제품 생산 판매	2013년 신규
재지정	2014	황토 영농조합법인	이철용	용지면 용지로 672	고구마말랭이 등 농산물 가공 및 판매	2015년 재지정
재지정	2015	궁지호박마을 영농조합법인	주상현	백산면 하서3길 69-3	어성초, 건나물 등 생산·판매	2016년 재지정
재지정	2017	손누리이야기 협동조합	채은숙	동헌4길 77	쌀자루 가공 및 체험상품개발	2019년 재지정
재지정	2020	수록골 영농조합법인	임형진	백산면 수록골길 50-10	무청 시래기 가공 및 판매	2021년 재지정
재지정	2020	사르반한과 영농조합법인	송연순	백구면 반월길 92-11	한과 제조 및 판매	2022년 재지정
신규	2020	김제행동하는청년 협동조합	임수빈	금구면 옥용로 79	농촌 체험·관광콘텐츠 개발	2022년 신규
신규	2021	지평선농부들 영농조합법인	허지혜	금구면 풍요로 867-14	생강 생산 및 상품화 개발	2022년 신규
예비	2021	민달팽이마을 영농조합법인	오미화	황산면 남산2길 29-13	생강 가공품 연구 및 농촌체험 공유공간 조성	
예비	2021	새만금청하드림 협동조합	정홍구	청하면 만경로 1490-19	새싹인삼 및 금화규 재배생산, 가공품 제조 판매	

## □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최초 지정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내용	비 고
2021. 05.14.	이룸 사회적협동조합	송수웅	순동2길 201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업
2022. 03.14.	사회적협동조합 새봄	박순주	두월로 207 (신풍동, 한신아파트) 나동 701호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회복지 서비스업
2020. 11.23.	푸른꿈 사회적협동조합	백정임	중앙4길 8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회복지 서비스업
2021. 09.06.	한국장애인지원 사회적협동조합	강정완	중앙로 147 3층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2021. 05.13.	사회적협동조합 보담	박홍수	요촌북로 2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2022. 07.29.	사회적협동조합 김제지평선 가치키움	오수진	요촌중4길 53-9	다함께돌봄센터 운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9. 09.10.	김제새만금 사회적협동조합	송형석	요촌길 172	새만금지역내 신재생에너지사업, 관광사업	농업, 어업 및 임업

□ 시 · 군별 사회적경제조직 규모 ('22. 7월)

구 분	합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사회적 기업	307	123	35	34	18	18	12	24	5	5	6	5	8	11	3
미을기업	112	7	6	10	16	8	9	13	3	6	7	7	8	9	3
사회적 협동조합	196	62	28	19	12	24	7	18	4	3	5	3	3	5	3
자활기업	85	17	8	14	7	4	4	5	4	4	1	5	4	5	3

수 신 : 김제시의회 의장 2022. 09. .

제 목 : 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별 첨 : 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부. 끝.

발의자 :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 (인)

외 인

(찬성자 서명 별첨)

# 의 안 발 의 찬 성 서 명 부

## □ 의안명 : 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